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909호
- 나. 발의자 : 박마루 의원
- 다. 발의일자 : 2015년 11월 24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6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 복귀에 지원하고자 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(안 제4조)
-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해 규정함 (안 제7조)
-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신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

5. 검토의견

(1) 제안 배경 및 개요

-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·경제적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,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
 - ‘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(보건복지부·질병관리본부, 2015)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30.6%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8.1%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- 따라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(2) 세부사항별 검토결과

□ 안 제1조(목적)

- 동 조례안은 “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상담, 치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,
- 이는 ‘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’ 을 동 조례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조직관리와 인사 등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
 - 따라서 본래 조례안 제정 취지인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‘센터 설치 및 운영’ 은 안 제5조에 따른 정신보건사업계획의 단위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원안	수정안
이 조례는 <u>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상담, 치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이 조례는 <u>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안 제4~6조(시장의 책무,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,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

○ 동 조례안은 「정신보건법(이하 법)」을 상위법으로

- 안 제4조는 법 제4조(국가등의 의무)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는 법 제4조의3(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) 제1항에 따라 시의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안 제6조는 법 제13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에 따라 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내용, 사업지원, 기관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□ 안 제7조(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)

○ 같은 조 제1항에서는 “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- “광역센터”는

안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서울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로서 안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“서울시 정신보건센터”로서 각호에 따른 기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
○ 같은 조 제4항에서는

“광역센터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”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,

- 이는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나, 센터장의 자격 및 근무 등에 대하여는 「정신보건법」에 규정이 없으며 “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” (보건복지부 지침)에 정신과 전문의와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임명하며, 근무형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나 상근 및 비상근 모두 가능하므로,

구 분	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(자살예방센터)			
센 터 장	임면 : 수탁 기관장(시·도지사)와 협의), 직영형인 경우 시·도지사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			
	유형	자격조건	근무형태	비고
	가형	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	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수탁 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능.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2일(16시간) 이상 근무	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 반드시 부센터장을 두어야 함
나형	1급 전문요원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경력10년 이상 &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경력 5년 이상)	상근	임상자문의 주2일(16시간) 이상 근무	

출처 : 보건복지부, 「2015 정신보건사업안내」, pp.53.

- “광역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” 로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원안	수정안
광역센터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	광역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

□ 안 제9조(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운영)

○ 제1항에서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” 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-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제1항을 잘못 지칭한 것으로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이 삭제되어야 할 것임

원안	수정안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	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